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15314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 6. 8.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억 4천만 원 및 2024. 6. 1. 이후 지연손해금.

이 유

갑1부터 갑1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4. 29. 피고로부터 양주시 C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임대기한 2024. 5. 24.)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는 기간만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해명 및 그 근거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목적물 손상이 원고의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사용수익에 따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한 2024. 6. 7.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사 박이규